

집합투자증권 위탁판매 계약서

도이치자산운용주식회사(이하 "갑"이라 한다)와 주식회사 경남은행(이하 "을"이라 한다)은 "갑"이 운영하는 별지의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"을"이 판매대행(이하 "위탁판매"라 한다)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업무계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계약목적) 본 계약은 위탁판매를 함에 있어 "갑"과 "을"의 권리, 의무,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.

제2조(업무범위)

"을"은 "갑"의 집합투자증권을 위탁판매 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.

1. 집합투자증권의 판매 및 환매
2. 집합투자증권의 모집 및 매출
3. 이익분배금 및 상환금의 지급
4. 세금의 원천징수 및 납부
5.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제신고 접수 및 처리
6.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 조치
7. 기타 위의 각호에 부수되는 업무

제3조(업무협조)

- ① "갑"과 "을"은 집합투자증권의 설정과 해지,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상황, 기타 위탁판매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나 의견을 서로 긴밀히 교환하는 등 성실히 협조한다.
- ② "갑"과 "을"은 위탁판매와 관련된 자료를 별도로 정하는 방법(한국예탁결제원 시스템 등 전산시스템, 팩시밀리(FAX), 전자전송(e-mail) 및 컴퓨터 통신망 등)을 통해 상호 교환한다.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유선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.

제4조(준수의무)

- ① "을"은 판매업무를 자기의 책임으로 수행하고 투자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- ② "갑"과 "을"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나 자료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계약에 따른 업무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.
- ③ "갑" 및 "을"은 관계법령과 당해 집합투자규약, 투자설명서, 감독기관의 명령, 한국금융투자협회(이하 "협회"라 한다)의 제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.

제5조(양도의 제한) "갑"과 "을"은 상호간에 서면에 의한 합의 없이는 본 계약상의 일체의 권리, 의무 등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.

제6조(판매창구의 분리) “을”은 영업점 내에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다는 문언이 표시된 판매창구를 설치하여야 하며, 최소 1명 이상의 집합투자상품 판매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.

제7조(판매회사의 부당행위 금지)

- ① “을”은 “갑”의 자산운용전략 수립 및 집행에 간섭하지 못하며, “을”이 인수한 주식이나 채권 등 특정유가증권의 매입을 “갑”에게 요구하거나 유가증권 등의 부당한 거래를 조장하는 등 “갑”의 자산운용행위에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② “갑”은 “을” 및 “을”의 계열회사(계열회사의 범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3호의 규정에 따른다. 이하 같다)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4조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독립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야 한다.

제8조(투자광고물의 심사)

- ① “을”은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활동을 위하여 투자광고를 할 경우에는 협회의 “금융투자 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[제2편 제3장 투자광고]”(이하 “투자광고규정”)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협회의 투자광고물 심사절차를 거쳐야 한다. 다만, “투자광고규정” 제2-42조 제1항 각호에 따라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만으로 투자광고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준법감시인의 심사절차를 거쳐야 한다.
- ② “을”은 제1항의 투자광고물 심사절차를 거쳐 적격승인을 받기 전에는 투자광고를 할 수 없다.

제9조(수익률의 표시) “을”은 집합투자상품의 광고선전물에 수익률을 표시할 경우에는 협회의 “투자광고규정”에서 정하는 수익률 표시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.

제10조(통장상 의무기재사항) “을”은 “갑”의 집합투자증권을 위탁 판매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집합투자증권 저축통장에 기재하여야 한다.

- 1. 집합투자업자의 명칭
- 2. 투자자에게 “투자설명서”를 교부 받아 상품의 주요내용을 확인할 것”을 요청하는 문언
- 3. “집합투자증권은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이 분배되는 실적배당 상품으로서 원본손실 가능성(투자성)이 있음”을 표시하는 문언

제11조(계약기간)

- ①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어느 일방이 서면으로 해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.
- ② 제1항의 해지 의사표시의 효력은 서면통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후에 발생하는

것으로 한다.

- ③ 집합투자증권의 추가설정이 발생할 때마다 별도의 개별 계약 없이도 본 계약이 성립되는 것으로 본다.

제12조(추가약정)

- ① 본 계약과 관련된 업무의 방법 등 본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 이외의 추가사항에 대해서는 “갑”과 “을”이 상호 협의하여 추가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.
- ② “갑”과 “을”이 별지의 집합투자기구를 추가 또는 삭제할 경우에는 위탁판매 부속계약서에 추가 또는 삭제 대상이 되는 집합투자기구명을 기재하고 상호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교환하는 방식으로 한다. 이 경우 부속계약서의 효력은 본 계약 전체에 미친다.

제13조(세부사항)

- ① 본 계약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“갑”과 “을”이 협의하여 세부지침을 정할 수 있다.
- ②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매각 및 환매절차, 장표 사용 등은 세부지침에 의한다.
- ③ 본 계약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과 거래관행에 따른다.

제14조(책임) “갑”과 “을”은 본 계약에서 규정하는 업무를 취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상대방 또는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


제15조(관할법원) “갑”과 “을”의 사이에 본 계약과 관련된 소송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“갑”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 관할법원으로 한다.

제16조(집합투자규약 등의 제공)

- ① “갑”은 관련 법령에 따라 집합투자규약, 투자설명서 및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“을”에게 적기에 제공하여야 한다.
- ② “을”은 “갑”으로부터 제공 받은 집합투자규약을 “을”의 영업점에 비치하여 투자자의 열람에 제공하고 투자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.
- ③ “을”은 “갑”으로부터 제공받은 투자설명서 및 자산운용보고서를 관련법령에 따라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.
- ④ “갑”은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을 변경할 경우에는 이를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.

제17조 (사모집합투자기구의 특례) 제8조, 제9조 및 제16조는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적용이 제외된다.

상기와 같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“갑”과 “을”은 본 계약서의 모든 조항을 확인하고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인함과 동시에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“갑”과 “을”의 쌍방이 기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09년 4월 15일

위탁회사(갑) : 도이치자산운용주식회사

서울특별시 종로구 서린동 33번지

대표이사 신 용



판매대행회사(을) : 주식회사 경남은행

경남 마산시 석전동 246-1

은행장 문 동 성



집합투자증권 위탁판매 세부업무협약서

도이치자산운용주식회사(이하 “갑” 이라 한다)와 주식회사 경남은행(이하 “을” 이라 한다)는 2009년 4월 15일자로 체결된 집합투자증권 위탁판매계약서(이하 “계약서” 라 한다.) 제12조 및 제13조에 의거하여 집합투자증권 위탁판매에 따른 세부업무절차 등을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.

제1조 (목적) 본 업무협약서는 “갑” 과 “을” 의 집합투자증권 위탁판매 업무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.

제 2 조 (계약서와의 관계)

- ① 이 세부업무협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.
- ② 계약서에 정의된 용어는 세부업무 협약서에서도 같은 의미를 지닌다.
- ③ 계약서 및 세부업무협약서의 일부 조항이 상치하는 경우에는 세부업무협약서가 우선한다.

제3조 (대행 표시) “갑” 이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을 “을” 이 위탁 판매함에 따른 투자설명서, 자산운용보고서, 기타 안내문 및 광고를 포함한 대외서류에는 “갑” 이 자산 운용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임을 명시한다. 다만, “을” 이 대내적으로 사용하는 장표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제4조 (업무 분담)

- ① “을” 은 “갑” 이 발행한 집합투자증권과 관련된 자산운용에 참여하지 않고 “을” 이 판매하는 “갑” 의 집합투자증권 위탁판매를 포함한 계약서 제2조의 업무를, “갑” 은 자산운용과 관련한 업무를 각각 성실히 이행한다.
- ② “갑” 과 “을” 은 계약서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위탁판매업무 이외에는 이 업무협약서 상으로 어떠한 추가적인 관계도 없으며 각각 상대방의 대리인 등의 관계가 아니다.
- ③ “갑” 과 “을,”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업무에 대하여 참여 또는 지시할 권한이 없다. 또한 불성실한 업무 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각기 원인을 제공한 측이 책임을 진다.

제5조 (위탁판매 범위) “을” 이 위탁 판매하는 집합투자증권의 종목 및 판매한도는 “갑” 과 “을” 이 협의하여 결정 한다.

제 6 조(집합투자기구의 판매 및 설정)

- ① “을” 은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여 그 대금을 당해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에게 납입한

다.

- ② “을” 이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을 의뢰하는 때에는 설정일자, 집합투자기구명, 설정좌수 및 금액 등을 기재한 집합투자기구 설정의뢰서를 설정전일에 “갑”에게 송부(예탁결제원 전산시스템 포함)하여야 하며, “갑”은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자, 집합투자기구명, 설정좌수 및 금액 등을 기재한 집합투자기구 설정통보서를 설정당일에 “을”에게 송부(예탁결제원 전산시스템 포함)하여야 한다. 다만, “갑”의 승낙을 받은 경우, 설정당일에 설정을 의뢰할 수 있다.
- ③ “을”은 집합투자기구 설정대금을 지정한 자금결제 계좌를 통하여 결제한다.

제 7 조(집합투자기구의 환매 및 해지)

- ① “을”이 투자자로부터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“갑”에게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. 이 경우 “갑”은 집합투자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현금 또는 자산의 매각에 의하여 조성한 현금으로 “을”의 환매요청에 응하고 “을”은 이를 환매 청구한 투자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. 다만, 관련법령에 따라 집합투자규약에서 본 조항과 달리 정한 경우에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
- ② “갑”이 제 1 항에 따라 투자자에게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, 집합투자기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“을”과 사전 협의한다. 다만, 집합투자규약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“을”과 사전 협의 없이 집합투자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.
- ③ “갑”이 집합투자재산인 투자증권의 매각이 불가능한 경우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유로 개별 집합투자규약에 정하는 날까지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유 및 향후 처리계획을 “을”에게 통지하여야 하며, “을”은 다시 지체 없이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④ “을”은 일부 해지가 예상될 경우 “갑”에게 해지 예정일자 및 해지 예정금액을 사전에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보한다.
- ⑤ 집합투자기구의 일부 해지시 “을”은 영업시간 중에 “갑”과 유선으로 협의한 후 일부 해지 청구서를 “갑”에게 송부(예탁결제원 전산시스템 포함)한다.
- ⑥ 동일날짜에 동일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복수의 판매대행회사가 일부 해지를 청구할 때 해지대상 집합투자기구 중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이 있어 해지청구대금의 전부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“갑”은 지급 가능한 금액을 관련법규 등에 따라 지급한다.

제8조(자금결제) “갑”과 “을”은 개별 집합투자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정, 해지 등에 따른 자금을 결제하여야 하며, 은행계좌 등 결제와 관련된 제반 사항들을 상호 교환하여야 한다. 또한 이의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상호 통보하여야 한다.

제9조 (기준가격의 통지)

- ① “갑”은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및 과표기준가격을 매일 영업시간 개시 이전까지 팩시밀리(Fax), 전자전송(e-mail), 컴퓨터통신망을 통해 또는 “갑”과 “을”이 정한 방법에 따라 “을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- ② “갑”은 기준가격 및 과표기준가격의 정확한 산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, 기준가격 및 과표기준가격 산정의 오류로 인한 손실은 “을”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한 “갑”의 책임으로 한다.

제10조 (판매보수)

- ① 집합투자증권 판매의 대가 또는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서 “갑”이 “을”에게 지급하는 판매보수는 “을”이 위탁판매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지급하기로 한다.
- ② “갑”은 제1항의 판매보수를 각 집합투자기구별로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판매보수 인출일에 “을”에게 지급하며,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.

제11조 (판매관련 비용)

- ① 집합투자증권의 위탁판매 관련 비용은 “을”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련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“갑”과 “을”이 협의하여 비용을 분담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의 판매관련 비용은 집합투자규약, 투자설명서, 기타 안내문 등의 인쇄비용 및 광고비용 등 영업에 직간접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.

제12조 (자료제공)

- ① “갑”은 “을”이 판매하는 집합투자증권과 관련한 집합투자규약, 투자설명서,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며, 그 내용에 중대한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“을”에게 미리 알린다.
- ② “갑”은 “을”의 요청 시 “을”에게 집합투자증권의 운용방침, 운용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관련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제공할 수 있다.
- ③ 집합투자기구 회계기간이나 신탁기간이 종료한 때에 “갑”은 그와 관련한 결산내역 또는 상환내역 등을 “을”에게 통보한다.
- ④ “을”은 “갑”의 요청 시 집합투자증권 판매현황에 관한 정보를 “갑”에게 제공하여야 한다.
- ⑤ “갑”은 “을”의 마케팅, 판촉, 판매 등에 이용할 목적으로 “을”이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정보를 관련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제공하기로 한다.

제13조 (통보방법) “갑”과 “을”은 위탁판매업무와 관련된 교환자료를 별도로 정하는 번호로 팩시밀리(Fax), 전자전송(e-mail) 및 컴퓨터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되, 불가피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유선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.

제14조 (업무처리) 본 세부업무협약서와 관련된 업무처리는 각각 “갑” 과 “을” 을 대표하는 위탁판매 관련 부서장 또는 해당업무부서장 명의로 한다.

제 15 조 (계약해지의 효과) 계약서 제 11 조에 따라 “갑” 과 “을” 간의 위탁판매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도 “을” 이 위 계약해지일 전에 판매한 집합투자증권 및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는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전부 해지되거나 신탁원본이 전액 상환될 때까지 집합투자증권 위탁판매계약서 및 본 세부업무협약서의 규정 중 당사자간 및 투자자와의 관계에서 권리의무관계를 정한 규정은 유효한 것으로 한다.

제16조 (기타)

- ① “을” 은 제3자에 대하여 위탁판매하는 집합투자증권의 수익률이나 “갑” 에 관한 기타 사항에 관하여 과장하거나 허위로 설명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, 이에 따른 일체의 손실은 “을” 의 책임으로 한다.
- ② “을” 은 집합투자증권 판매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의 관계법령을 준수한다.
- ③ 본 세부업무협약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사항은 관계법령, 집합투자규약 및 당사자간의 별도 협의에 의해 처리한다.
- ④ “갑” 과 “을” 은 본 협약 체결일 이후 쌍방 계약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서면으로 작성하고 기명 날인함으로써 보다 더 상세한 추가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.

“갑” 과 “을” 은 본 협약서의 모든 조항을 확인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함과 동시에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자 기명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09년 4월 15일

위탁회사(갑) : 도이치자산운용주식회사

서울특별시 종로구 서린동 33번지

대표이사 신 용 일

판매대행회사(을): 주식회사 경남은행

경남 마산시 석전동 246-1

은행장 문 동